

# 「2017 국외 유관기관 우수사례 4」 국제 성매매 철폐 연합(CAP International)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는 국외의 성매매·성착취 인신매매 방지 정책과 피해자 보호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국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국외 유관기관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7년 ‘국외 유관기관 우수사례’ 그 네 번째 기관으로 ‘국제 성매매 철폐 연합(Coalition for the Abolition of Prostitution-International)’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기고문에서 국제 성매매 철폐 연합은 (1) 국제 성매매 철폐 연합의 사명과 목적, (2) 폭력의 한 형태이자 불평등에 대한 착취로서 성매매와 성매매 철폐를 위한 권고, (3) 국제 인권법 하의 성매매 금지와 성매매 철폐라는 국가적 의무를 이행하는 최선의 방법, (4) 일명 ‘노르딕 모델’이 적용된 프랑스 법률의 통과와 그 입법과정, (5) ‘천국의 여성들(Girls of Paradise)’ 캠페인과 그 성과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고문의 필자는 국제 성매매 철폐 연합의 그레고이어 테리(Grégoire Théry)와 잘라 즈보가(Zala Žbogar)입니다.<sup>1)</sup>

## 국제 성매매 철폐 연합 - 기관 소개와 성매매 시스템의 분석 및 성매매 철폐를 위한 활동

목차

I. 성매매 철폐를 목적으로 세계 22개 단체가 연합하다 .....	1
II. 성매매 시스템: 분석과 권고 .....	7
III. 국제 인권법과 성매매: 국가적 의무와 국가적 의무를 이행하는 최선의 방법 .....	9
IV. 반성매매 활동의 강화와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한 프랑스 법률 .....	15
V. 천국의 여성들(Girls of Paradise) 캠페인 .....	26
VI. 한국독자에게 전하는 말 .....	28

<sup>1)</sup> 이 기고문의 인용 시, 아래와 같이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héry, G. and Žbogar, Z. (2017). 2017 국외 유관기관 우수사례 4- 국제 성매매 철폐 연합 (CAP International).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 1. 성매매 철폐를 목적으로 세계 22개 단체가 연합하다

국제 성매매 철폐 연합은 현장의 NGO들을 위한 지원(advocacy) 기구이자 변화를 추구하는 국제적인 단체이다.

국제 성매매 철폐 연합의 근본적인 목적은 (1) 국내적으로 진보적인 법률의 채택과 이행, (2) 다음의 활동을 증진하는 국제적 기준의 채택과 이행을 증진하는 것이다.

- 여성과 여아에 대한 성착취 철폐
- 성매매된 사람과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인 보호, 지원, 탈출구 제공
- 현장지원 서비스와 성매매 생존자들의 역량 강화

국제 성매매 철폐 연합의 22개 회원단체들은 유럽, 북미, 남미,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성매매 및 성착취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우리 회원단체들은 성매매 생존자들과 협력하거나 성매매 생존자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국제 성매매 철폐 연합은 회원단체들이 자국에서 진보적으로 법률을 개정하고 국제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킨다.

이를 위해, 우리 회원단체들은 사무국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제 성매매 철폐 연합의 전략과 우선과제를 결정한다. 국제 성매매 철폐 연합의 총회(General Assembly)와 이사회는 실제로 우리 회원단체들이 선출한 대표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국제 성매매 철폐 연합은 국내의 NGO 회원단체들에 의해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국제적인 성매매 철폐주의 기관이다.

### 다섯 가지 핵심 원칙

국제 성매매 철폐 연합의 회원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핵심 원칙에 기반한 정책을 지지한다.

- (1) 성매매된 사람의 비범죄화
- (2) 모든 성매매된 사람을 위한 보호, 지원, 탈출구 제공
- (3) 인신매매법, 포주, 성구매자에 대한 불처벌 금지(No Impunity)

(4) 모든 성적 행동의 구매를 범죄화

(5) 전문가를 위한 교육과 어린 세대들을 위한 예방 조치와 교육

## 네 가지 전략적 캠페인

국제 성매매 철폐 연합과 그 회원단체들은 다음의 네 가지 전략적 캠페인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 **(1) 인권 중심적 접근법**

성매매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성평등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다. 국제 인권법은 성매매를 이와 같이 규정하며, 성매매로 인한 착취를 금지한다. 국가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에 의한 착취를 철폐할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철폐주의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우리 연합체는 유엔여성(UN Women),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를 포함,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각국이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또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과 국제인권감시단(Human Rights Watch)과 같이 포주와 성구매자의 비범죄화라는 우려스러운 입장을 갖고 있는 주요 국제 비영리기구들에 대항하여 행동을 취해왔다.

그 활동 성과로 국제 성매매 철폐 연합은 “국제 인권법 하의 성매매(Prostitution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에 관한 법적 분석보고서를 3개 국어(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www.cap-international.org](http://www.cap-international.org)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2) 성매매 철폐를 지지하는 의원들**

우리는 시민들이 성매매 시스템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민주적 과정들을 신뢰한다. 이 때,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요구를

포괄적인 정책(comprehensive policies)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 연합체는 전 세계 국회의원들과 협력하여 성매매 철폐주의 정책의 채택 및 이행과 관련한 우수사례들을 공유하도록 돕는다. 그 활동의 일환으로 국제 성매매 철폐 연합은 설립 후 4년 동안 10명의 장관(캐나다, 인도,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과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을 만났다.

### (3) 라스트 걸 퍼스트(Last Girl First)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전 역사에 걸쳐서 구조적으로 가장 소외된 집단들이 성착취와 성매매의 다수를 차지했다. 성매매는 극빈층 여성과 여아들에게 압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고도로 젠더화된 가부장적 시스템이다. 근친강간과 성폭력 피해자들, 원주민 여성과 아동들, 사회적 계급이 낮은 집단들, 이주 여성과 아동들, 소수민족 여성과 여아들은 여전히 포주, 인신매매범, 성구매자들이 일차적으로 노리는 성착취 피해자들이다.

우리 연합체는 캐나다 원주민에서부터 인도의 하층 계급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들을 모아 이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활동의 일환으로 ‘라스트 걸 퍼스트(Last Girl First)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 성매매 철폐 연합의 분석과 정책적 권고를 뒷받침하는 범분야 캠페인으로, 정책이 누구를 위해 설계되어야 하는지 강조한다.

### (4) 양질의 일자리 제공

성매매는 ‘성노동(Sex Work)’이 아니라 수익성 높은 성착취 및 학대 시스템으로,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와 성평등 노력을 위태롭게 한다. 성매매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가 규정한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및 노동자의 권리와 양립할 수 없다.

국제 성매매 철폐 연합은 성매매 철폐주의를 지지하는 노조들을 식별하고 협력하고자 노력하며 다수의 노조가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하고 여성과 여아의 성착취에 반대하는 우리의 캠페인을 지지하도록 했다. 2014년 프랑스 파리, 2017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성착취 반대를 위한 세계 회의(World Congresses Against Sexual Exploitation)’에서 몇몇 노조 대표들은 자신들의 노조는 성매매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성착취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 국제 성매매 철폐 연합의 회원단체 및 전략적 파트너

국제 성매매 철폐 연합은 현재 17개국 22개의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 Apne Aap (인도)
- Breaking Free (미국)
- Comision Unidos vs Trata (멕시코)
- Embrace Dignity (남아프리카공화국)
- Exit Prostitution Association (핀란드)
- EVA Center (미국)
- Fondation Scelles (프랑스)
- Iniciativa Pro Equidad Genero (콜롬비아)
- KAFA (레바논)
- La CLES (캐나다)
- KFUKs Sociale Arbejde (덴마크)
- Malos Tratos (스페인)
- Marta Center (라트비아)
- Médicos del Mundo (스페인)
- Mouvement du Nid (프랑스)
- People Serving Girls at Risk (말라위)
- Reden (덴마크)
- Ruhama (아일랜드)
- Solwodi (독일)
- South Kolkota Hamari Muskan (인도)
- Talita (스웨덴)
- Women@thewell (영국)



그림 1. 국제 성매매 철폐 연합 회원단체

국제 성매매 철폐 연합은 또 국제적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적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

-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CATW)
- Equality Now
- European Women’ s Lobby (EWL)
- SPACE International

국제 성매매 철폐 연합 회원단체들과의 공동 행동

국제 성매매 철폐 연합과 회원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여러 공동 행동들에서 협력하고 있다.

-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의 공식 프로그램 안에서 스웨덴과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냄으로써 정부가 처음으로 후원한 성매매 철폐주의 행사를 두 차례 개최하는 등 회원단체들과 함께 유엔에서 6개 부대행사 조직





- 6개 국회에서 지원 및 발표(오타와, 로마, 리가, 파리, 유럽국회, 런던)



- 마드리드, 베이루트, 런던, 리가, 멕시코, 몬트리올, 파리, 뉴욕, 로마, 뉴델리, 브뤼셀에서 개최된 12회의 국내 지원 회의에 참여하고 공동 후원함.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여성,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등에 정기적으로 공개서한과 공식 의견서 발송
- 파리와 뉴델리에서 여성 및 여아에 대한 성착취에 반대하는 세계 대회를 2차례 개최하여 25개국에서 수백 명의 철폐주의 지지자들이 참여함.



Paris, 12 November 2014  
International abolitionist Congress organised by CAP International in French Parliament.

-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국내적으로 전략적 지원을 제공함.

## II. 성매매 시스템: 국제 성매매 철폐 연합의 분석과 권고

성매매 시스템은 폭력의 한 형태이다.

- 성매매된 사람의 대다수는 성매매에 유입되기 전에 (흔히 성적) 폭력을 경험한다.
- 성매매된 사람의 대다수는 성매매에 있는 동안 (신체적, 언어적, 성적, 심리적 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 피해자이다.
- 신체적인 욕망이 아니라 경제적 필요, 불평등, 그리고/또는 취약성의 착취로 인해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성적 행위는 그 자체가 성폭력이다.

성매매 시스템은 불평등에 기인한 착취이다.

- 성매매는 남성의 이득을 위해 여성의 몸을 제공하는 오랜 가부장적 관행 중 하나이다(초야권(droit du seigneur)<sup>2)</sup>, 강간, 성희롱, ‘부부간의 성관계 의무’ 등)
-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 가난한 자에 대한 부자의 지배, 후진국에 대한 선진국의 지배, 소수 집단에 대한 주류 집단의 지배 등 다중적인 형태의 불평등에 기인한 착취이다.
- 전 세계적으로 소수 집단, 차별받는 집단, 이주민 집단은 성매매에서 과다 대표된다.

성매매 시스템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 성매매 시스템은 인간의 몸과 성을 시장(marketplace)의 영역에 놓음으로써 모든 여성과 여성 신체의 대상화(objectification)를 강화시킨다. 성매매는 성매매된 사람의 신체적·윤리적 완전성(Integrity)을 직접적으로 훼손한다.
-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 특히 여성의 신체를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강화한다. 이러한 태도는 강간, 성희롱, 친밀한 관계에서

<sup>2)</sup> 편집자 주: 드루아 뒤 세노르(droit du seigneur)란 중세 영주가 자기 영지의 농노의 딸의 처녀성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문화적 모티프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정작 이것이 중세 유럽에 실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위키백과).



일어나는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 등 다른 형태의 여성폭력에서도 존재한다.

- 성매매는 우리 사회에서 진정으로 자유롭고 서로를 존중하며 평등한 섹슈얼리티를 구현하는 데 장애가 된다.

성매매 시스템은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가속화·영속화시킨다.

- 성매매 시스템은 인권 침해이다.
- 1949년 12월 2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협약은 그 전문에서 “성매매와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는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고 천명하고 있다.
- 1979년에 유엔이 채택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각국 정부가 “모든 형태의 여성 인신매매 및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철폐하기 위해 입법 등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성매매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와 제5조 “누구도 고문을 당하거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멸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와 양립할 수 없다.

### 성매매 시스템의 철폐를 위한 권고

국제 성매매 철폐 연합은 성매매 시스템 철폐 정책 및 기준의 채택과 이행을 지지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된다.

- 성매매된 사람들에게 대한 억압적인 조치의 폐지
- 모든 형태의 포주 행위 및 알선 행위의 범죄화
- 성매매된 사람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과 탈출 프로그램 개발
- 성매매 생존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

- 성적 행위 구매의 금지
- 인체의 상품화에 반대하는 투쟁과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예방 및 교육 정책
- 성매매된 사람의 모국 내 예방정책 개발
- 이러한 조치의 이행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자들을 위한 교육 정책

### III. 국제 인권법과 성매매: 국가적 의무와 국가적 의무를 이행하는 최선의 방법

국제 인권법과 성매매에 관한 국제 성매매 철폐 연합의 논문을 소개한다.<sup>3)</sup> 이 논문의 목적은 (1) 인권과 관련된 현재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성매매 및 그 착취와 관련하여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설명하며, (2) 각국이 인권과 관련한 국가적 의무를 이행하는 최선의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다.

**섹션 1. 성매매 관련, 국제법과 인권에 대한 분석: 성매매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국가는 포주 및 알선 행위 등 그 착취를 종식시킬 직접적인 의무가 있다.**

i. 국제 인권법은 성매매를 인권침해로 규정한다.

a.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은 근본적인 인권이며, 유엔 체재의 구성 원칙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보호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의 근본 원칙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유엔헌장(1945)의 서문에는 “*유엔의 설립에 참여한 각국 국민들의 이상이자 공통된 목표*” 중 하나라고 규정하고 있다. 1945년 6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비준된 이 헌장은 유엔 체재의 핵심 조약이다.

b. 성매매는 인권법 하에서 인간 존엄성의 침해로 인식된다.

세계인권선언(1948)을 채택한 이듬해에 유엔 총회는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이하

<sup>3)</sup> 여기에는 논문의 목적, 주요 주장들, 결론이 포함된다. 논문 전문(영어, 불어, 스페인어)은 [www.cap-international.org](http://www.cap-international.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유엔 인신매매방지협약)’ 을 채택했다. 이 협약은 보편적 인권을 지지하는 유엔 협약의 하나이며, 구속력 있는 조약이다. 실제로 이 협약은 유엔 협약 중 유일하게 성매매와 성착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구속력 있는 협약이다. 유엔 인신매매방지협약은 그 서문에서 성매매와 인신매매는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 고 명시하고 있다.

ii. 국제 인권법은 특히 포주 행위, 알선 행위, 업소 운영 등 성매매를 통해 타인을 착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a. 국제 인권법은 성매매로 인한 모든 형태의 착취를 금지한다.

두 개의 구속력 있는 유엔 협약은 성매매에 의한 타인의 착취를 금지하고 있다. 바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유엔 인신매매방지협약이다. 이 두 협약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것이기 때문에 보편성을 갖고 있다. 또, 두 협약을 비준하거나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에게는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b. “성매매에 의한 타인의 착취” 는 포주 행위, 알선 행위, 업소 운영을 포함한다. 성매매에 의한 모든 형태의 착취를 철폐하기 위한 국가적 의무의 범주는 유엔 인신매매방지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이 협약은 특별히 성매매에 의한 타인의 착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유엔의 유일한 조약이며, 인간 존엄성 보호에 관한 조항들이 담고 있는 일반적인 금지사항들을 정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의 1조는 성매매에 의한 모든 형태의 착취를 금지한다. 국가는 동의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타인의 성매매를 통해 이윤을 취하거나 타인의 성매매를 조장하는 자를 처벌할 의무가 있다.

iii. 각 국가와 유엔 기관들이 성매매 및 그 착취의 종식에 기여해야 할 의무

a. 성매매 및 성매매의 착취와 관련하여 국제 인권법에서 부과한 국가적 의무

- 각국 정부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국제 인권법의 초석이다(i-a 및 b 참조). 성매매 및 그 착취와 관련된 정책을 규정하고 이행할 때 국가는 성매매 철폐와 피해자 보호를 목표로 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사실상 성매매를 장려하여 인간 존엄성의 훼손을 조장할 수 있는 정책을 이행해서는 안 된다. 성매매를 ‘성 노동’으로 정당화하거나 장려하거나 사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모든 정책은 구속력 있는 유엔 인권법과 양립할 수 없다.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한 189개 국가는 성매매에 의한 모든 형태의 착취를 금지할 직접적이고 구속력 있는 의무가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ii-a 및 b 참조), 여기에는 포주 행위, 알선 행위, 성매매 업소 운영이 포함된다. 따라서 포주 행위, 알선 행위, 성매매 업소 운영을 비범죄화하거나 용인하는 국가는 국제 인권법의 정신과 조문을 모두 위반하는 것이며, 특히 “모든 형태의 여성 인신매매와 성매매에 의한 여성 착취 철폐” 라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 b. 성매매 및 그 착취 관련, 국제 인권법에 따른 유엔의 조직, 기구, 프로그램의 의무

유엔헌장에 따라 유엔의 모든 조직과 기구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권리”의 존중을 증진할 의무가 있다. 국제 인권법 하에서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엔의 모든 조직과 기구는 성매매의 철폐와 피해자의 보호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유엔의 조직과 기구는 인권침해로 간주되는 행위를 정상화하고 때로는 증진할 것을 목표로 하는 ‘성 노동(Sex Work)’이라는 용어 사용에 반대할 의무가 있다.

성매매 철폐에 기여하고 성매매를 장려하거나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해야 한다는 이 구체적인 의무는 유엔이 성적 행위의 구매를 “성학대”로 인정했다는 사실에 의해 더욱 분명해진다. ‘성착취 및 성학대로부터 보호를 위한 특별 조치(Special measures for protectio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2017)’에 관한 특별 보고서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성학대를 “불평등하거나 강압적인 조건 하에서 실질적인 또는 위협에 의한

성적인 침해 행위” 라고 규정한다.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 보고서는 특히 유엔 활동과 관련한 성행위의 구매를 금지하고 있다(아래 섹션 2, ii 편 참조).

섹션 2.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구매자를 범죄화함으로써 성매매를 철폐하는 것이 왜 기본권 측면에서 성매매와 그 착취를 철폐하는 데 유일하게 효과적인 방법인가

i. 철폐주의 정책의 기본 원칙과 정의

a. 인권의 틀 안에서 착취를 철폐하기 위한 기본 원칙

성매매와 그 착취의 철폐는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의무이며, 이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는 인권의 존중을 증진하는 정책을 구현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 성매매 철폐 연합은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

- 포주 행위, 알선 행위, 성매매 업소 운영을 포함하여 성매매의 착취를 철폐하기 위한 국가적 의무의 이행(위 참조)
- 성매매된 사람에 대한 모든 억압적인 조치를 폐지하고, 보호와 탈출 프로그램 제공(위 참조)
- 성착취의 출발점이자 그 자체로서 성학대의 한 형태인 성행위의 구매 금지(위 참조)

b. ‘성매매 철폐’ 라는 개념의 이해

‘철폐’ 는 ‘금지’ 의 동의어도 아니고 ‘직접적인 근절’ 의 동의어도 아니다. 성매매된 사람, 포주, 구매자를 무차별적으로 겨냥하여 성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성매매 피해자들의 상황을 개선시키지 못하며, 예방, 교육, 탈성매매 정책을 위한 지지기반도 제공하지 못한다. 또한 이는 성매매 폭력의 주동자를 밝혀내지도 못한다. ‘성매매를 철폐한다는 것’ 은 지금 당장 그리고 완전히 ‘성매매를 근절한다는 것’ 을 의미하지 않는다. 노예제는 150년 전에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존재한다. 노예제의 폐지는 노예제의 직접적인 근절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다만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노예제에 맞서 싸우고

그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채택하도록 하는 과정이었다. 성매매의 철폐 역시 하나의 과정이며, 다음을 목표로 한다.

- 성매매의 폐해와 성매매에 내재된 폭력,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구현하는 데 장애가 됨을 이해한다.
- 성매매 시스템을 척결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채택한다.

## ii. 성매매된 사람을 전면적으로 비범죄화하고 성매매로부터 탈출할 권리 보장

### a. 성매매된 사람의 비범죄화

성매매된 사람의 비범죄화는 국제법 하의 직접적이고 구속력 있는 의무는 아니지만, 인권법의 목적에 온전히 부합한다. 유엔 인신매매방지협약은 공식적으로 ‘성매매 피해자’의 지위를 인정한다(16조). 피해자의 지위는 성매매된 사람의 범죄화와 양립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유엔 협약은 ‘동의에 의한 것이라도’ 성매매를 통해 타인을 착취하는 행위를 규탄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매매된 사람에게 자신의 착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반대로, 이 협약은 국가가 이주자를 포함한 성매매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 b. 보호, 지원, 탈출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유엔 협약은 성매매에 의한 타인의 착취를 금지할 뿐 아니라, 국가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이 협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예방 및 재활 정책을 이행한다(16조)
- 외국인 피해자들에게 공정한 사법제도와 재정적 보상을 제공한다(5조)
- 성매매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모든 차별적 법률과 조치를 폐지한다(6조)

-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된 외국인 피해자들에게 임시 보호 및 생계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19조)

### III. 성적 행위 구매의 보편적인 금지

A. 성의 수요 측면을 겨냥하는 것은 성매매에 의한 착취를 철폐해야 하는 국가적 의무를 이행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B. 성의 구매는 유엔에 의해 ‘성학대’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편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2003년에 코피 아난(Kofi Annan)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의 활동과 관련하여 성착취와 성학대를 종식시킬 것을 목표로 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 보고서는 ‘성착취와 성학대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특별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전략 문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강조한다.

1. 유엔 사무총장은 “성착취와 성학대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적인 법적 규범과 기준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한다.
2. 유엔 사무총장은 “성착취”와 “성학대”를 정의한다.
3. 유엔 사무총장은 성행위의 구매를 성학대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한다.

### 결론

이 글은 국제법과 기본 원칙의 틀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국제 인권법은 성매매를 인권 침해로 인식하며, 성매매에 의한 착취를 금지한다.
2. 국가가 인권의 측면에서 성매매에 의한 착취를 철폐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유일한 방법은 철폐주의 정책을 이행하는 것이다.



#### IV. 반성매매 활동의 강화와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한 프랑스 법률

2016년 4월 13일, 프랑스 정부는 성매매 반대 투쟁을 강화하고 성매매된 사람의 지원을 목표로 하는 철폐주의 법률을 제정했다. 이로써 프랑스는 성매매 및 인신매매와 관련된 공공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였다. 이 법은 3년에 걸친 초당적인 국회절차, 시민사회와 의사결정자들 간의 긍정적인 지원 덕분에 통과될 수 있었다. 국제 성매매 철폐 연합의 프랑스 회원단체인 무브망 뒤 니(Mouvement du Nid: 등지운동)와 풍다시옹 쉘레(Fondation Scelles)는 성매매의 현실을 보여주고 시민사회를 동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 섹션에서는 (1) 6년에 걸친 입법 과정, (2) 이 법률의 목표, 정신, 법률조문, (3) 법 제정 1년 후 법의 효과성 등을 살펴본다.

##### 6년간의 입법 과정

**2009년:** 국제 성매매 철폐 연합의 회원단체인 무브망 뒤 니(Mouvement du Nid)가 시작한 ‘성매매 없는 유럽(A prostitution free Europe)’을 위한 캠페인은 유럽의 선거 출마자들로 하여금 정당의 프로그램에 철폐주의 정책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2010년:** 6개의 지역 심포지엄에 이어서 2010년 2월 11일에 무브망 뒤 니(Mouvement du Nid)는 프랑스 국회에 성매매와 관련한 공공정책 평가 결과를 제출했다. 17개 단체가 협력하여 성매매 정책 개혁과 관련된 10개의 권고안을 마련했다. 2010년 7월, 전 대중운동연합당(UMP) 소속이었던 다니엘 부스케(Danielle Bousquet) 사회당 의원과 기 제프로이(Guy Geoffroy) 공화당 의원은 프랑스 내 성매매와 관련하여 초당적 진상조사 활동에 착수했다. 프랑수와 피용(Francois Fillon) 정부는 ‘여성폭력 척결’을 국정 과제로 내걸었다. 이를 지지하는 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성매매와 그로 인한 인신매매’가 여성폭력 목록에 추가되었고, 라디오와 TV 광고를 통해 홍보되었다.

로셀린 바셀로(Roselyne Bachelot) ‘연대 및 사회통합부(Ministry of Solidarity and Social Cohesion)’ 장관은 ‘여성폭력 척결을 위한 2011-2013년 범부처간 계획’에 성매매를 포함시켰다. 이 문서는 성행위의 구매를 폭력의 한 형태로 규탄하고 있다.

**2011년 4월 13일:** 부스케-제프로이 보고서 ‘성매매, 책임을 위한 요건(Prostitution, the Requirement for Responsibility)’은 이 법률의 통과에 기여한 대대적인 운동을 촉발시켰다.

다니엘 부스케(사회당) 의원과 기 제프로이(보수당) 의원이 의장을 맡은 ‘프랑스 내 성매매에 관한 국회 진상조사 위원회’는 프랑스와 외국에서 7개월에 걸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선도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성매매에 의한 폭력의 철폐와 성행위의 구매 금지라는 두 개의 혁신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정치 프로젝트가 기획되었다.

**2011년 6월:** 무브망 뒤 니(Mouvement du Nid), 풍다시옹 셸레(Fondation Scelles), 아미칼르 뒤 니(Amicale du Nid)가 ‘철폐 2012 연맹(Abolition 2012)’을 결성했다. 순식간에 50개 단체가 이 연맹에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모든 단체들이 성폭력과 성차별주의 폭력의 척결과 폐지주의 법률의 채택을 지지했다.

**2011년 9월:** ‘우리는 사회에서 추방되지 않을 것이다. 성매매를 거부하는 남성들’에 서명한 ‘성구매를 하지 않는’ 남성들의 모임인 제로마초(Zéromacho)는 이렇게 선언했다. “우리에게 섹슈얼리티는 무엇보다도 타인의 자유와 욕구에 대한 존중 그리고 평등으로 경험되는 인간관계이다.”

**2011년 11월 29일:** ‘철폐 2012 연맹’이 프랑스 국회에서 1차 철폐주의자 대회(abolitionist convention)를 조직했다. 각 정당의 대표들이 ‘철폐 2012 연맹’의 성매매 시스템 폐지를 위한 호소문을 지지했다.

**2011년 12월 6일:** 프랑스 국회가 성매매 없는 사회를 장기적인 목표로 하는 프랑스의 철폐주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은 “통제할 수 없는 성적 욕구라는 개념은 섹슈얼리티에 대한 구시대적인 관점이며, 강간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개념은 성매매를 정당화할 수 없다.” 고 명시하였다. 이 결의문은 프랑스 국회의 모든 정당 대표들이 서명하였고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2012년 3월 7일:** 라 시갈(La Cigale)에서 44개 여성운동 단체(FEM- “Féministes en Mouvement” )들이 대통령 선거 후보들을 대상으로 호소문을 발표했다.

공동으로 출간한 “Mais qu’ est-ce qu’ elles veulent (encore)?(우리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재청)?” 라는 자료에서 제안한 30개 조치 중에는 차별의 대상인 성매매된 사람에서 성구매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12년 6월 23일:** 나자 발로-벨카생(Najat Vallaud-Belkacem) 여성권리부(Ministry of Women’ s Rights) 장관은 성매매를 철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사회당이 2010년에 채택한 ‘Convention Egalité Réelle(실질적인 평등을 위한 협약)’ 을 재 언급한 것으로, 이 협약은 성구매자가 처벌될 것임을 분명히 예측하였다.

**2013년 4월 13일:** 성매매 업소들을 폐쇄한 지 67년 만에 프랑스에서 조직된 최대 규모의 철폐주의자 모임이 파리의 마쉴 뒤 물랑 루즈(Machine du Moulin Rouge)에서 개최되었다. 이 모임에는 55개 단체와 유명인사, 정치인, 여배우, 사회적 이해관계자들, 생존자들이 참여했다. ‘성매매 시스템의 철폐를 지지하는 시민들(Citizen’ s Abolition of the Prostitution System)’ 모임에서 베누와 하몽(Benoît Hamon) 장관을 비롯한 주요 정당의 원로 대표들이 성매매 생존자인 로렌스, 로젠, 나탈리와 함께 등장하여 이 철폐주의 프로젝트의 위상을 높였다. 침묵과 수치심을 종식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직 성매매 종사자들이 처음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연대조직을 결성했다. 이 “생존자들” 은 독보적인 발언으로 성매매와 알선 행위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로비에 맞서 싸운다. 이 세 생존자들의 공개적인 증언이 주요한 영향을 끼쳤다.

**2013년 9월 17일:** 프랑스 국회의 여성권리대표단(Delegation for Women's Rights)이 수행한 작업의 결과물인 ‘올리비에 보고서(Olivier Report)’는 부스케 보고서의 제안이 입법적 프레임워크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2013년 10월 10일:** 성매매 시스템의 철폐를 위한 법률 초안이 사회당에 의해 프랑스 국회에 제출되었다.

**2013년 10월 17일:** 상원 사회문제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Affairs of the Senate)가 샹탈 주아노(Chantal Jouanno, 대중운동연합당)와 장-피에르 고데프로이(Jean-Pierre Godefroy, 사회당) 의원에게 위임한 활동에서 성매매된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2013년 11월 23일:** 평소와 같이 11월 25일에 진행된 ‘여성폭력추방’ 시위는 주황색 우산의 물결로 뒤덮이면서 철폐주의를 지지하는 대규모 시위로 바뀌었다.

**2013년 11월 29일:** 국회의 반구형 건물에 참석자는 많지 않았으나, 모든 정당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대중운동연합당(UMP)과 유럽생태녹색당(EELV) 측에서는 두 가지 주요 조치를 비판했다. 대중운동연합당(UMP)은 인신매매법을 처벌하기 위한 도구로써 제시된 호객 행위의 범죄화 철폐를 비판했고, 두 당 모두 ‘성구매자’를 처벌하면 성매매된 사람들이 빈곤해 질 뿐 아니라 자신의 몸을 통제할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2013년 12월 4일:** 프랑스 국회에서 진행된 1차 심의에서 성매매 철폐법 초안에 대한 투표 결과는 분명했다. 268명이 찬성하고 138명이 반대했다(기권 79명).

**2014년 5월 28일:** 상원의원들이 국회의 1차 심의에서 채택된 철폐주의 법안 상정에 반대한 것과 관련하여 ‘철폐 2012 연맹’의 NGO 단체들이 상원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2014년 10월 12일:** 성매매 생존자인 로젠 히셔(Rosen Hicher)는 39일간 743 km를 걸어서 파리에 도착했다. 히셔의 목표는 법률안이 상원에 상정되도록 촉구하는 것이었다. 이 도보 여행에서 로젠 히셔는 매우 긍정적인 환영을 받았고, 성매매를

둘러싼 미디어의 보도와 사람들의 태도 변화에 크게 기여했다. 여러 정당의 많은 정치인들이 로젠 히셔에게 지지를 보냈고, 법안의 채택을 지지했다.

**2014년 11월 12일:** 국제 성매매 철폐 연합의 1차 대회가 프랑스 회원단체인 무브망 뒤 니(Mouvement du Nid)와 풍데시옹 셸레(Fondation Scelles)와 함께 조직되었고 전 세계 24개국에서 250명이 참가했다.

**2015년 3월 30일:** 두 번째 심의에서 상원은 ‘성구매자’의 범죄화 조항을 삭제하고, 호객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을 다시 포함시켰다. 대중운동연합당(UMP)의 수정안에 의해 다시 도입된 수동적인 호객 행위의 범죄화는 162명 찬성에 161명 반대로 유지되었고, ‘성구매자’의 범죄화는 189명 반대에 107명 찬성으로 거부되었다. 이와 같이 왜곡된 법률은 165명 찬성, 44명 반대(124명 기권)로 채택되었다.

여성 권리를 담당하는 마리솔 툴레인(Marisol Touraine) 사회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장관은 이 법률이 ‘여성을 경멸하는’ 것이며 성매매된 사람들에게 가해진 참을 수 없는 ‘이중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 법안의 차기 심의에서 성매매를 축소하기 위한 ‘주된 도구’인 성구매자의 범죄화를 재도입하겠다고 말했다.

**2015년 6월 2일:** 특별위원회에서는 모든 정당의 의원들 대다수가 초안의 기본 원칙들을 회복시킨 버전을 채택하였다. 여기에는 (성매매된 사람에 의한) 호객 행위의 비범죄화, 상원이 거부한 성행위 구매의 금지를 통해 포주와의 싸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성매매된 사람들에 대한 보호와 사회적 지원을 높이는 조처 등이 포함된다. 이는 모든 정당의 의원들이 참여하여 수정한 결과였다.

**2015년 6월 12일:** 두 번째 심의에서 프랑스 국회는 성매매 시스템에 대한 반대 투쟁을 높이고 법안의 조화를 복원하기 위한 법안을 채택하였다.

2015년 10월 13일: ‘철폐 2012 연맹’의 회원단체들이 성구매자의 범죄화에 반대하여 단결한 남성 상원의원들의 성차별주의(sexism)를 비판하기 위해 상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2015년 10월 14일: 두 번째 심의에서 상원은 성행위의 구매 금지를 다시 한 번 거부했다. 그러나 성매매된 사람에 의한 호객 행위 금지를 무효화하는 조항은 채택했다.

2015년 11월 18일: 국회의원들과 상원의원들이 공동조정위원회(Joint Conciliation Committee)를 위해 만났으나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016년 2월 3일: 국회가 성적 행위 구매의 범죄화를 세 번째로 재도입하는 포괄적인 버전의 법안을 채택했다.

2016년 3월 10일: 상원이 성구매의 범죄화 조항에 마지막으로 반대했다.

2016년 4월 6일: 상원과 하원에서 세 번의 심의가 끝나고 공동조정위원회가 실패로 돌아간 뒤, 국회에 ‘최종 발언’ 기회가 주어졌고, 찬성 60, 반대 12로 성매매 반대 투쟁을 높이고 성매매된 사람의 지원을 목표로 하는 법률안이 채택되었다.

2016년 4월 14일: 성매매 반대 투쟁의 강화와 성매매된 사람의 지원을 목표로 한 ‘2016년 4월 13일 법률’이 프랑스 공화국 관보에 발표되었다.

### 본 법률의 목적

성매매 반대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성매매된 사람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2016년 4월 13일 통과된 법률은 세 가지 신념을 기반으로 한다. 즉, 성매매는 여성폭력의 한 형태이며, 평등의 장애물이고, 인권 침해라는 것이다.

프랑스 역사상 최초로 이 법률은 돈을 매개로 한 모든 성적 행위를 금지하며, 성매매된 사람을 비범죄화하고 탈성매매를 위한 국가적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회가 그들의 편에 서도록 하고 있다.

알선 행위의 금지와 관련하여 이미 확고하게 마련되어 있는 법안에 더하여 이 새로운 법률은 두 가지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성매매로의 신규 유입 흐름을 차단하는 것인데, 이것은 가장 취약하고 갈수록 성매매 유입 연령이 낮아지는 집단(대부분이 여성)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성매매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승리는 역사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여성권리의 진보에 필적할만한 것이다. 이것은 인권, 여성해방, 평등을 위해 (사회적·성적) 폭력에 대항한 싸움이다. 이것은 인간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시장의 범주에서 배제시키도록 한다.

### **이 법률의 정신**

이 법률은 철폐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성매매 시스템의 반대자들은 시장의 힘으로부터 성을 해방시킬 것을 요구함으로써 돈을 대가로 타인의 몸을 통제할 남성의 권리를 철폐하고자 한다.

이러한 철폐는 결코 이론적인 유토피아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다. 노예제가 폐지된 후, 노예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성매매 시스템을 철폐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성매매가 사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몸과 섹슈얼리티가 영구적으로 시장의 범주에서 배제된다고 명시함으로써 사회가 성매매를 줄이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그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어느 누구도 타인을 성매매 함으로써 어떠한 이득도 얻을 수 없으며, 또한 인간의 몸과 섹슈얼리티의 상품화를 조직하거나 조장할 수 없다.
- 어느 누구도 보상을 대가로 타인의 몸 또는 섹슈얼리티를 이용하거나 성적인 관계를 얻을 수 없다.
- 어느 누구도 생존을 위해 자신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서는 안 되며, 개인은 성매매를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행 가능한 권리를 갖는다.



19세기에 철폐주의는 규제주의(업소)에 대한 대응으로 정의되었다. 21세기에 철폐주의는 인간, 특히 여성의 상품화를 촉진하는 자유주의적인 알선 시스템에 대한 대응이다.

### **성매매 시스템 척결을 위한 법률 조항들**

포주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 덕분에, 그리고 1946년의 업소 폐쇄로 인해 프랑스는 자국 영토 안에서 포주 행위와 알선 행위를 제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침해이자 폭력의 한 형태인 성매매를 진정으로 줄이거나, 운명에 내맡겨진 성매매 피해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필요한 수단들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다음을 통해 이 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률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 **호객 행위의 처벌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억압을 종식시키다**

보통법(Common Law)에의 접근을 가능케 하고 성매매로부터의 탈출 통로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이 조항은 상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1939년부터 프랑스에서 금지된 성매매된 사람에 의한 호객행위 범죄는 자신에 대한 착취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부과했다. 1946년과 1958년 사이, 포주 행위보다 호객행위가 더 엄격하게 처벌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만하다. 호객 행위라는 경범죄를 형사사법체계에서 삭제하고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조치들을 도입함으로써 법률의 초점을 차별의 철폐로 전환시키고,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성매매로부터의 탈출 통로를 제공하다**

이 법률은 성매매된 사람들에게 때로는 어렵고 막혀 있는 길(주택, 고용, 보건 등)을 통과해 가는 데 도움이 되는 포괄적인 정책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의 카운티와 동급인) 부서 단위에서 운영될 것이다. 정부 서비스와 NGO들을

포괄하는 이 정책에는 예방 프로그램과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이 제공될 것이다. 사회복지수당의 수급 자격이 없는 모든 성매매된 사람은 사회적·직업적 재통합을 돕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들에게 보호와 지원을 보장하다**

이 법률은 성매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체납세를 면제한다. 또 외국인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 조치로써, 피해자가 인신매매 또는 포주 조직에 대한 증언을 할 입장이 아닐 때에도 임시 체류 허가를 내주도록 한다. 단, 성매매 탈출을 조건부로 해서 인신매매·포주 조직이 이 조항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이 법률은 유죄가 확정된 포주가 파산하였을 때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포주 행위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규정을 강화하였다.

### **성행위의 구매를 금지함으로써 성매매를 줄이다**

이 법은 성매매를 통해 타인을 이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일반화하고 있다. 성행위 구매의 범죄화는 어느 누구도 금전 교환을 대가로 성행위를 요구함으로써 타인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을 착취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법은 수요 측면에 대응함으로써 포주 조직이 범죄 수익에 우호적인 입법이 마련되어 있는 국가에 투자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성매매에 놓인 자들에게 처음으로 법적 억제책(legal deterrent)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하는데, 법적 억제책이란 성매매에 놓인 자들이 잠재적으로 폭력적인 성구매자들에게 대항해서 자신의 ‘(유리한) 조건(conditions)’을 주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 **예방, 교육, 훈련을 위한 국가정책을 수립하다**

이 법은 성매매의 현실과 인체의 상품화에 따른 위험에 관한 학교 교육 정책을 규정한다. 여기에는 남녀평등을 증진하는 내용이 학교 성교육에 포함된다. 또 사회복지사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에 성매매 예방, 성매매와 포주 행위 및

인신매매의 적발에 관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추가한다.

## 법률 통과에 따른 효과

이 법이 통과된 후 불과 1년 만에 프랑스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었다.

- 성매매된 사람을 호객 행위로 체포하는 관행이 효과적으로 중단되었다.
- 937명의 성구매자들을 체포하여 벌금을 부과하였다.
- 성매매된 사람에 대한 신체적·성적 폭력을 ‘가중 상황’으로 간주하였고, 여러 재판에서 적용되었다.

이 법률의 사회 현장(social chapters)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관령(ministerial decrees)을 발표해야 한다. 2017년 4월 현재 (5개 중) 4개의 이행 명령이 발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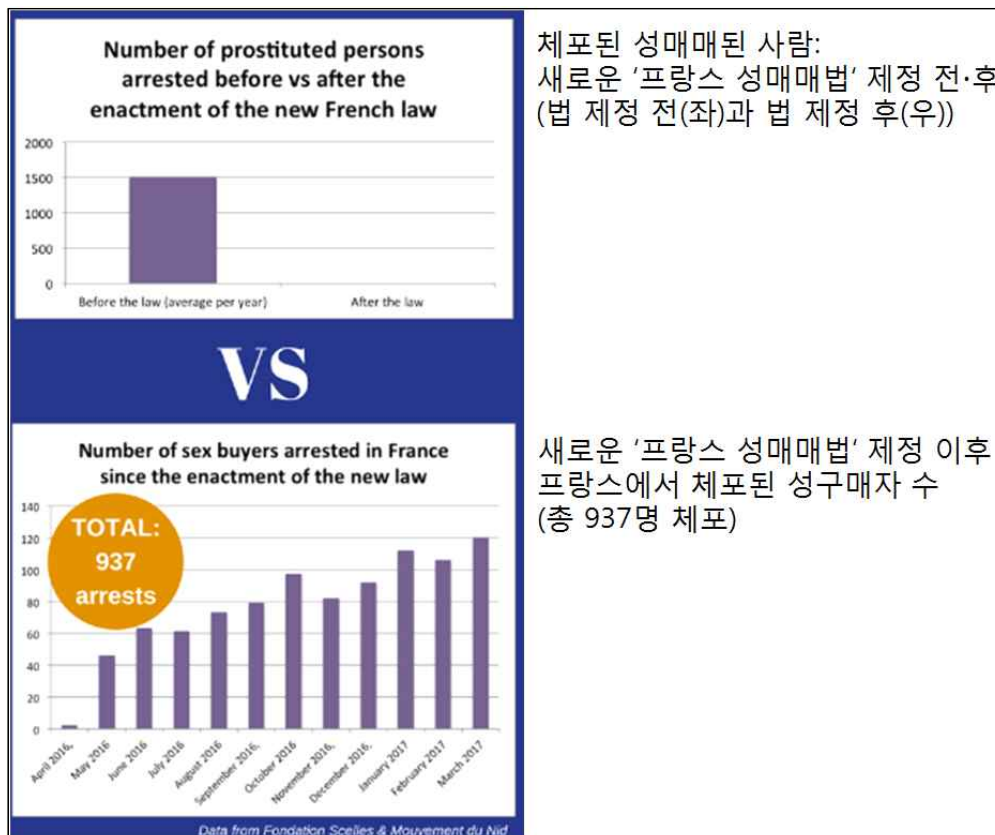
- 국가적 <탈성매매 정책>의 이행
- 신체적·심리적 건강과 관련한 피해 감소
- 외국인 피해자들을 위한 체류 허가
- 성구매자 대상의 의무적인 인식개선 강의 이행



국제 성매매 철폐 연합의 프랑스 회원단체인 무브망 뒤 니(Mouvement du Nid)와  
퐁데시옹 쉘레(Fondation Scelles)는 ‘철폐 2012 연맹’의 60개 회원단체들과

함께 성매매·인신매매 피해자로서 새롭게 인정받은 권리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하는 일을 우선과제로 지정하였다.

- 법적, 심리적, 의료적 지원
- 탈출 프로그램 제공
- 응급 지원 및 사회적 주택 지원
- 재정적 지원
- 임시 체류 허가
- 교육 및 양질의 일자리 지원
- 아래는 프랑스 철폐주의법의 발효 전(연 평균 1,500명)과 후(0명)에 체포된 성매매된 사람의 수를 보여준다. 또 법이 발효된 후 1년간 성구매자 체포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서 총 937건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sup>4)</sup>



체포된 성매매된 사람:  
새로운 '프랑스 성매매법' 제정 전·후  
(법 제정 전(좌)과 법 제정 후(우))

새로운 '프랑스 성매매법' 제정 이후  
프랑스에서 체포된 성구매자 수  
(총 937명 체포)

원출처: 무브망 뒤 니(Mouvement du Nid)와 폰테시옹 셸레(Fondation Scelles)

4) 편집자 주: 기고자는 이 자료를 발행한 무브망 뒤 니(Mouvement du Nid)와 폰테시옹 셸레(Fondation Scelles)가 프랑스 여성권익부(Ministry of Women's Rights)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았으며 프랑스 여성권익부는 프랑스 내무부(the Ministry of Home Affairs)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았다고 알려줌.

## V. 천국의 여성들(Girls of Paradise) 캠페인: 성매매의 내재된 폭력성에 대해 성구매자들을 교육시키다

‘천국의 여성들(Girls of Paradise)’은 성구매자와 포주들에 의해 살해되었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은 실제 성매매 여성을 광고하는 가짜 웹사이트<sup>5)</sup>로, 2016년 9월에 국제 성매매 철폐 연합 회원단체이자 성매매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인 무브망 뒤 니(Mouvement du Nid)와 유명한 광고 에이전시인 맥칸 파리(McCann Paris)가 공동으로 진행한 캠페인이다. 국제 성매매 철폐 연합은 이 캠페인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일을 지원했다.

캠페인을 소개하는 비디오<sup>6)</sup>는 이 프로젝트를 간략히 설명하고, 특히 성착취 인신매매가 온라인으로 옮겨질 때 감춰지는 성착취 인신매매에 내재된 폭력성에서 성구매자와 웹사이트가 하는 역할을 보여준다.<sup>7)</sup>

### 캠페인의 핵심 메시지

이 가짜 웹사이트는 성구매자들로 하여금 ‘사용자 친화적인 경험’이라는 미명 아래 가려져 있는 성착취 인신매매에 내재된 폭력을 직면하도록 만들었다. 즉, 성구매자들을 성착취 인신매매의 현실에 노출시킴으로써 이 캠페인은 성구매자들에게 그들의 행동 이면에 있는 폭력성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웹사이트들에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본질적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젠더 불평등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근본적으로 폭력적인 성매매 문제에 단지 반창고를 붙이는 것에 불과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인신매매와 성매매에 대한 수요를 종식시킬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와 같은 나라들은 법적인 책임을 피해자에서 구매자, 포주, 인신매매범들에게로 전환시키는 피해자 중심적인

5) <http://girlsofparadise.sex/>

6) <https://youtu.be/v5C8fETpsWc>

7) 편집자 주: 캠페인을 소개하는 비디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 1’ 참조

대응책들을 구현하였다. 우리는 다른 국가들도 이 전례를 따를 것을 촉구한다.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공식 인정되어야 하며, 성매매된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비범죄화하고 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캠페인에 대한 주요 반응들

캠페인 시작 첫 주에 600명의 성구매자들이 “성매매 여성을 구매하기 위해” ‘천국의 여성들’에 전화를 걸었고, 수천 명이 채팅 문자를 보냈다.<sup>8)</sup> 이처럼 즉각적이고 방대한 양의 연락은 성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고 성착취 인신매매를 영속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웹사이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준다.

### 캠페인의 성과

이 캠페인 소개 비디오의 영어 버전은 국제 성매매 철폐 연합과 맥칸 파리(McCann Paris)의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으며, 이미 7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여러 언어(스페인어, 러시아어, 영어 등)로 번역되었으며, 로이터 통신(Reuters), 미국의 공영 라디오(National Public Radio, NPR), 애드위크(Adweek) 등 여러 방송사에서 소개되었다.

무브망 뒤 니(Mouvement du Nid)와 맥칸 파리(McCann Paris)의 ‘천국의 여성들’ 캠페인은 또 최근에 창의적인 사업 활동에 주어지는 클리오상<sup>9)</sup>(Clio Award) 금상을 수상하였다.

<sup>8)</sup> 편집자 주: 기고자에 의하면 성매수남들이 이용한 전화는 단 2일간만 개통되었으며 이 캠페인을 진행한 무브망 뒤 니(Mouvement du Nid)의 자원봉사자가 해당 전화를 수신하였음(전화회선과는 별도로 얼마나 많은 성매수남들이 ‘천국의 여성들’의 채팅방을 이용하였는지는 1주일간 기록되었음). 현재 이 캠페인은 종료되어 전화 통화는 불가능하지만 ‘천국의 여성들’ 사이트는 접속 가능하며 사이트 내 채팅방은 컴퓨터 자동 응답 메시지이므로 이용 가능함.

<sup>9)</sup> <http://clios.com/awards>

## VI. 한국독자에게 전하는 말

국제 성매매 철폐 연합은 (1) 여성과 여아에 대한 성착취를 철폐하고, (2) 성매매와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인 보호·지원과 탈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3) 현장 활동가들과 성매매 생존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진보적인 국내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성착취 없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국 정부가 2004년도에 통과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성매매된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비범죄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것은 범죄의 책임을 성매매 피해자에서 수요로부터 이윤을 취하는 사람들, 즉 포주, 업소 운영자, 성구매자들에게로 완전히 전환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권리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의 제한적인 피해자 지위를 확대하여 성착취 인신매매의 피해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거래·성매매의 피해자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여성들을 성매매에 유입시키는 다중적인 취약성은 신체적 강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 성학대의 경험, 또는 다른 형태의 차별에 근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 성매매 철폐 연합은 시민사회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성매매된 사람들의 탈출을 지원하는 예산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부록 1. ‘천국의 여성들’ 캠페인 소개 비디오

주요 영상	내용
	<p>영상은 15세에 납치되고, 강간당했으며, 성매매를 강요당했다(LeParisien, 2015.12.5.일자), 포주에게 감금된 성매매 여성, 창밖으로 뛰어내려(20 minutes, 2015.9.7.일자) 등 성매매 현실에 대한 뉴스 보도로 시작된다. ‘오늘날, 성매매 여성이 된다는 것은 심각한 폭력의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매매 시스템에 돈을 지불함으로써 성매수자는 이와 같은 폭력의 공범자가 된다. 우리는 성매수자들에게 그들의 행위의 결과를 깨닫게 하고 싶었다’ 는 메시지를 전달한다.</p>
	<p>성구매자와 포주들에 의해 살해되었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은 실제 피해 여성을 광고하는 가짜 에스코트 웹사이트인 ‘천국의 여성들’ 에 대한 소개(성매수남은 여성들이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음)</p>
	<p>성구매를 위해 전화를 건 남성은 그가 매수하려고 했던 여성이 성매수남에 의해 이미 살해되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된다. 영상은 이와 같은 캠페인을 통해 ‘성구매자의 인식을 변화시켰으며 프랑스의 도덕성을 일깨웠다 We changed clients’ perception and awoke the country’s moral sense’ 고 전한다.</p>
	<p>이 기고문의 저자이기도 한 그레고이어 테리(Grégoire Théry)는 ‘착취된 자를 처벌하기 보다는 착취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시급하다(It’s urgent to punish the exploiters rather than those exploited)’ 고 전한다.</p>
	<p>해당 영상은 프랑스는 성매수남을 처벌하는 법이 통과되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된다.</p>